

건설공사 및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

1. 개요

- 건설업과 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스스로 계산·확정보험료를 산정 후 신고·납부해야함
- 다만, 중층적 하도급 구조와 입·이직이 잦은 근로자의 특성상 보수총액 파악이 곤란한 경우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보수총액(총공사금액×노무비율)을 기초로 보험료 산정
- * 건설업 보험료 산정 : 총공사금액 × 건설업 노무비율 × 보험료율
- * 벌목업 보험료 산정 : 벌목재적량 × 벌목업 노무비율 × 보험료율

📁 근거법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시행령

- ▲ 법 제13조(보험료)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2. `25년 건설공사 및 별목업 노무비율 산정

<1> 산정방식

□ 일반건설공사(직영·원수급공사) 및 별목업 노무비율

- (건설업 노무비율) 최근 3년간('21.7.1.~'24.6.30) 건설업 전체 보수총액
÷ 최근 3년간 총공사금액
- (별목업 노무비율) 최근 3년간('21.7.1.~'24.6.30) 별목업 전체 보수총액
÷ 최근 3년간 별목재적량*

* 별목된 임목의 총량을 부피로 환산한 값

< 건설공사 및 별목업 노무비율 산정방법 >

- **건설공사 노무비율:**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 총공사금액에서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frac{\text{과거 3년간 건설업 전체 보수총액}}{\text{과거 3년간 건설업 전체 총공사금액}}$$
- **별목업 노무비율:**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별목업 별목재적량에서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frac{\text{과거 3년간 별목업 전체 보수총액}}{\text{과거 3년간 별목업 별목재적량(단위m³)}}$$

□ 건설하도급공사 노무비율

-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보된 전문건설업체의 보수총액을 외주비를 제외한 총공사금액으로 나누어 산정

* 건설업 하도급 노무비율 실태조사('24년, 한국물가협회, '24.12.4) 결과 활용

<2> 산정결과

□ (일반건설공사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7%

$$\frac{\text{3년간 총보수총액(183조 6,287억원)}}{\text{3년간 총공사금액(673조 3,539억원)}} = \text{'25년 노무비율(27.27\%)}$$

□ (별목업 노무비율) 별목재적량 1m³당 10,374원

$$\frac{3\text{년간 보수총액}(196,351\text{천원})}{3\text{년간 별목재적량}(18,927\text{m}^3)} = \text{'25년 별목재적량 1m}^3\text{당 10,374원}$$

□ (하도급건설공사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9%

$$\frac{3\text{년간 총보수총액}(17\text{조 } 5,916\text{억원})}{3\text{년간 총공사금액}(60\text{조 } 7,200\text{억원})} = \text{'25년 노무비율}(28.9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I.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업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벌목업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0일

고용노동부장관

I.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m³당 10,374원으로 한다.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